
대관규정

대 관 규 정

| | | | |
|----|-------|-----|----|
| 제정 | 2000. | 7. | 1 |
| 개정 | 2001. | 3. | 16 |
| 개정 | 2002. | 2. | 2 |
| 개정 | 2002. | 11. | 18 |
| 개정 | 2003. | 10. | 16 |
| 개정 | 2004. | 12. | 21 |
| 개정 | 2006. | 3. | 24 |
| 개정 | 2006. | 7. | 19 |
| 개정 | 2007. | 3. | 29 |
| 개정 | 2007. | 9. | 17 |
| 개정 | 2007. | 12. | 17 |
| 개정 | 2008. | 3. | 26 |
| 개정 | 2010. | 8. | 19 |
| 개정 | 2011. | 9. | 19 |
| 개정 | 2012. | 9. | 6 |
| 개정 | 2012. | 11. | 22 |
| 개정 | 2013. | 3. | 15 |
| 개정 | 2013. | 12. | 26 |
| 개정 | 2014. | 6. | 12 |
| 개정 | 2014. | 10. | 16 |
| 개정 | 2015. | 8. | 27 |
| 개정 | 2016. | 3. | 28 |
| 개정 | 2017. | 12. | 26 |
| 개정 | 2020. | 12. | 23 |
| 개정 | 2021. | 7. | 29 |
| 개정 | 2021. | 12. | 27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관범위)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02.11.18, 2004.12.21)

1. 기본시설 : 세종대극장, 세종M씨어터, 세종S씨어터, 세종체임버홀,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,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, 한글갤러리 및 기타 부속시설 (개정 2001.3.16, 2002.2.2, 2006.3.24, 2006.7.19, 2007.3.29, 2007.12.17, 2010.8.19, 2012.9.6, 2014.10.16, 2017.12.26., 2020.12.23., 2021.7.29., 2021.12.27.)
2. 부대시설 : 테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(개정 2002.2.2, 2006.7.19)
3. 삭제(2004. 12. 21)

제3조(대관신청)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

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대관심사위원회) ① 대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에 의한다. (개정 2013.12.26, 2015.8.27)

② 제3조 제3항 정기 및 수시대관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 (개정 2011.9.19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.

제5조(대관승인)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,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.

제6조(사용시간) ① 회관 공연장에 대한 공연대관의 경우 사용시간을 공연○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로 하고 중간휴식 포함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23.)

② 공연장의 준비 및 철수대관은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내에서 1회당 기본 4시간 사용 가능하다. (신설 2020.12.23.)

③ 회관 미술관 대관의 경우, 사용시간은 10:30~20:00을 원칙으로 하며,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20.12.23.)

④ 제1항~3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,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시행 내규에 따라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. (개정 2020.12.23.)

⑤ 이외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. (신설 2020.12.23.)

제7조(사용료 등)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,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.

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.

④ 삭제(2008. 3. 26)

⑤ 삭제(2008. 3. 26)

⑥ 재해,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국가적 상황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료 특별감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회관 외부 환경(대규모 집회 등)으로 인한 관객 입장 및 공연지연 등으로 대관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방침으로 특정 공연의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 (신설 2020.12.23.)

제8조(입장권의 발행)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사용료 특례) ① 삭제(2008. 3. 26)

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2. 국가적 행사,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3.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.(개정 2006.3.24, 2006.7.19, 2007.12.17, 2008.3.26, 2015.8.27., 2017.12.26., 2020.12.23.)

가. 대극장, M씨어터, S씨어터 /미술관

| 해지시점 대관기간 | 사용예정일로부터 120~17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180~23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240~29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일~7일 | 납부한 계약금 중 40% | 납부한 계약금 중 60% | 납부한 계약금 중 80% | 납부한 계약금 중 100% |
| 8일~14일 | 반환 안함 | 납부한 계약금 중 40% | 납부한 계약금 중 60% | 납부한 계약금 중 80% |
| 15일~27일 | 반환 안함 | 반환 안함 | 납부한 계약금 중 40% | 납부한 계약금 중 60% |
| 28일 이상 | 반환 안함 | 반환 안함 | 반환 안함 | 납부한 계약금 중 40% |

나. 세종체임버홀/기타

| 사용예정일로부터 120~17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180~23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240~299일 전 |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납부한 계약금 중 40% | 납부한 계약금 중 60% | 납부한 계약금 중 80% | 납부한 계약금 중 100% |

다.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회관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대관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.

| 공연장 | 대관 기간 | 해지시점 및 반환금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|
|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| 1일~ 7일 | 사용예정일부터 90일~119일 이내/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40% | |
| | 8일~ 14일 | 사용예정일부터 90일~119일 이내/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% | |
| | 15일 ~27일 | 사용예정일부터 90일~119일 이내/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% | |
| | 28일 이상 | 사용예정일부터 90일~119일 이내/ 반환 안함 | |
| 체임버홀 | | 사용예정일부터 60~89일 이내/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% | 사용예정일부터 90~119일 이내/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% |

라. 수시대관 승인통보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·M씨어터·S씨어터 90일 이내,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 대관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사용료 중 50%를 반환한다.(개정 2017.12.26., 2020.12.23.)

4.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 전 취소한 경우 :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(개정 2020.12.23.)

제10조(대관신청제한, 사용취소·제한)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. (개정 2020.12.23.)

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(개정 2016.3.28)
2.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3.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
4.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신고받았을 때
5.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6.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
7. 삭제(2020.12.23.)
8. 삭제(2020.12.23.)
9.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(개정 2020.12.23.)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
2.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
3.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4. 회관의 승인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
5.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(개정 2016.3.28)
6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
③ 삭제(2020.12.23.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 대하지 못한다.

제11조의2 (사용자의 안전관리) ① 사용자가 공연, 행사,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

소방법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(신설 2002. 2. 2)

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 (무대안전관리자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(신설 2002. 2. 2, 개정 2012.11.22)

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(신설 2002. 2. 2)

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(신설 2002. 2. 2)

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무대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(신설 2002. 2. 2, 개정 2012.11.22)

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(신설 2002. 2. 2)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3조(입장제한)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회관의 점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
5.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4조(배상책임)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(개정 2020.12.23.)

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③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. (개정 2020.12.23.)

제15조(적용규정)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시행내규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(2000. 7. 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01. 3. 1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2. 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12. 2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 3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 7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6년도 대관(사용일 기준)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,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07. 3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9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12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.

부 칙 (2008. 3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9년도 대관(사용일 기준)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 (2010. 8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.

부 칙 (2011. 9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9. 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11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3. 1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(사용일기준)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3. 12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(사용료 등)은 2015년도 대관(사용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4. 6. 1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(사용료 등) 별표1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고, 별표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며, 단, 별표2 적용 시 별표1은 삭제하며, 이 규정 시행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14. 10. 1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8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3. 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12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2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조(사용시간), 제7조(사용료 등), 제9조(사용료 특례), 별표 2는 대관사용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,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21. 7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12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(사용료 등), 별표 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하는 대관 건부터 적용하되,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<별표 1> (삭제 2016.1.1)

<별표 2> (신설 2014.6.12, 2015.8.27)

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용료

1. 기본시설사용료 (개정 2003.10.16, 2006.7.19, 2007.3.29, 2007.9.17, 2007.12.17, 2008.3.26, 2013.3.15, 2014.6.12, 2015.8.27., 2017.12.26., 2020.12.23., 2021.12.27.)

○ 공연대관 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구분 | 분 류 | 사용료(1회) | 초과 30분당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극장 | 한국 전통예술 | 4,500,000 | 450,000 |
| | 클래식·발레·무용·오페라 | 5,500,000 | 550,000 |
| | 뮤지컬·콘서트 | 9,000,000 | 900,000 |
| | 행사 | 10,000,000 | 1,000,000 |
| M씨어터 | 한국 전통예술 | 1,100,000 | 110,000 |
| | 공연 | 1,500,000 | 150,000 |
| | 행사 | 3,000,000 | 300,000 |
| S씨어터 | 한국 전통예술 | 900,000 | 90,000 |
| | 공연 | 1,100,000 | 110,000 |
| | 행사 | 2,200,000 | 220,000 |
| 체임버홀 | 한국 전통예술 | 1,000,000 | 100,000 |
| | 공연 | 1,300,000 | 130,000 |
| | 행사 | 2,600,000 | 260,000 |

○ 준비 및 철수대관 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구분 | 분 류 | 기본대관 (4시간) | 주간대관 (09시~17시) | 종일대관 (09시~22시) | 초과 30분당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대극장 | 한국 전통예술 | 2,250,000 | 3,937,500 | 6,187,500 | 290,000 |
| | 클래식·발레·무용·오페라 | 2,750,000 | 4,812,500 | 7,562,500 | 350,000 |
| | 뮤지컬·콘서트 | 5,500,000 | 9,625,000 | 15,125,000 | 690,000 |
| | 행사 | 6,000,000 | 10,500,000 | 16,500,000 | 750,000 |
| M씨어터 | 한국 전통예술 | 550,000 | 962,500 | 1,512,500 | 69,000 |
| | 공연 | 750,000 | 1,312,500 | 2,062,500 | 94,000 |
| | 행사 | 1,500,000 | 2,625,000 | 4,125,000 | 190,000 |
| S씨어터 | 한국 전통예술 | 450,000 | 787,500 | 1,237,500 | 57,000 |
| | 공연 | 550,000 | 962,500 | 1,512,500 | 69,000 |
| | 행사 | 1,100,000 | 1,925,000 | 3,025,000 | 140,000 |
| 체임버홀 | 한국 전통예술 | 500,000 | 875,000 | 1,375,000 | 63,000 |
| | 공연 | 650,000 | 1,137,500 | 1,787,500 | 82,000 |
| | 행사 | 1,300,000 | 2,275,000 | 3,575,000 | 163,000 |

※주간대관은 9시부터 17시까지 무대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, 종일대관은 9시부터 22시까지 무대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 대관을 의미함.

○ 기타 대관

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구분 | 무대 및 객석(2시간) | 객석(2시간) | 로비(2시간)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극장 | 4,400,000 | 1,760,000 | 1,320,000 |
| M씨어터 | 1,200,000 | 480,000 | 360,000 |
| S씨어터 | 880,000 | 352,000 | 264,000 |
| 체임버홀 | 1,040,000 | 416,000 | 312,000 |

※기타 대관은 콘텐츠 촬영 및 제작 목적에 한정한다.

※ 기타사항

1. 삭제(2021.12.27.)
2. 대관일정 중 공연대관 일정 내 주 1일 휴연시에 해당 일에는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 다만 그 주 내 추가 휴연이 있는 경우, 공연장 점유에 따른 1일 1회의 공연대관료를 부과한다. (신설 2021.12.27.)
3. 15회차 이상 공연하는 전 공연장의 모든 공연에 한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공연대관료에 20%의 할증을 적용한다. (신설 2021.12.27.)
4. 철야 시간대 (23시~09시) 공연 준비 및 철수는 지양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내규로 정한다. (개정 2013.12.26., 2017.12.26., 2020.12.231., 2021.12.27.)
5. 극장과 직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해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전협의하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무대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한 경우는 해당 시간만큼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. 단, 주말·공휴일 공연, 1일 다 회 공연, 마티네 공연의 경우는 생략 또는 축소 운영하더라도 초과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 (신설 2020.12.23. 개정 2021.12.27.)
6. 삭제(2020.12.23.)
7.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(개정 2021.12.27.)
 - 해당 극장 기본 조명, 냉난방
 -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
 -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
 - 기본 기술스태프
8. 콘서트란 대중음악, 재즈, 크로스오버로 분류되는 장르를 콘서트라 한다. (신설 2021.12.27.)

○ 전시대관(개정 2010.8.19, 2012.9.6, 2014.10.16., 2016.3.28., 2021.7.29.) 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시설명 | 면 적(㎡) | 대관료(1일) | 대관료(1주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(지상1층) | 686 | 1,024,000 | 7,168,000 | 1.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2. 개관시간 10:00~19:30 |
|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(지하1층) | 609 | 780,000 | 5,460,000 | |
| ※ 부대설비 및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. | | | | |

※ 기타사항

미술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표와 같이 대관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할증을 적용한다. 대관기간이 익년도까지 이월된 경우에도 동일 전시로 간주하여 할증을 적용한다.

| 적용일수 | 할증율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일 ~ 30일 | 기본대관료의 20% |
| 31일 ~ 60일 | 기본대관료의 30% |
| 61일 이상 | 기본대관료의 50%할증 |

2. 부대시설 사용료 (개정 2006.7.19)

| 시설명 | 사용료(기준가) | 비 고 |
|---|----------|---|
| 테크플라자 | 400,000원 | 1. 기본 1회 4시간 기준 2. 전기요금 : 실비산정 (한전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) 3. 방송, 영화, 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(공간) 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. |
| ※ 추가 사용료 및 준비(장치),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. | | |

3. 부속시설 사용료 (개정 2004.12.21, 2006.7.19, 2007.9.17., 2008.3.26., 2021.12.27.)

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시설명 | 위치 | 사용료(4시간)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|--|
| VIP룸 | 대극장 | 1,200,000 | 대극장 대관단체의 대관일정에 한함 |
| 귀빈실 | 대극장 | 300,000 | 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 대관단체의 대관일정에 한하며, 우선순위는 대극장→M씨어터→체임버홀 순으로 함 |
| 리허설룸 | S씨어터 | 75,000- | - |

4. 삭제 (2004. 12. 21)

5. 로비 사용 수수료 (신설 2021.12.27.)

(단위:원, 부가세 별도)

| 시설명 | 구분 | 수수료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| 사용내역 | | |
| 대극장 | 공연 상품 판매 | 25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| 공연 외 프로모션 | 50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M씨어터 | 공연 상품 판매 | 20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| 공연 외 프로모션 | 40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S씨어터 | 공연 상품 판매 | 10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| 공연 외 프로모션 | 20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체임버홀 | 공연 상품 판매 | 15,000/3.3㎡ | 공연 1회 |
| | 공연 외 프로모션 | 30,000/3.3㎡ | 공연 1회 |